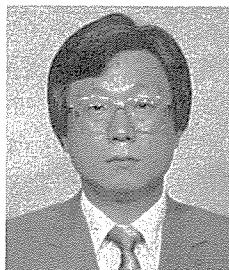


言論界에서 본 나의 所見



日刊工業新聞
部長 李 軍 浩

낙농가, 유가공업계 축협 및 관련단체등 유관 이해당사자들간에 침예한 논란을 벌여왔던 酪農振興法 改正(案)이 이번정기국회에 상정돼, 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것 같다.

정부는 酪農振興法 改正(案)을 만들면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이익이 보장될 수 있고 우선되지 않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堅持)함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낙농가를 비롯 유관단체,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 업계 간 주요 쟁점이 돼왔던 낙농위원회 설치문제는, 제 3의 독립기구로 신설할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국회의 입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또다시, 이해당사자인 낙농업계 관련조합 등 일각에서 국회에 상정된 酪農振興法 改正(案)은 정부의 안(案)이기 앞서 가공업체의(안)이라고 주장, 낙농가권익보호가 우선되지 않는 법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계획생산이 전제가된 수급조절(안)과 상설 낙농위원회 설치(안)은 생산자인 낙농업계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취하고 있다.

이같이 낙농업계가 권익보호 문제를 앞세워 낙농 진흥법개정(안)에 대해 반발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생각하기에 앞서 법개정(안)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낙농진흥법개정 문제는 1981년 서울우유가 집유권 지역인 서울, 경기지방의 집유를 자체조합에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유일원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시발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우유에서 이같은 계획안이 본격 검토되자 남양, 매일유업등 일반 유가공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 결국 백지화 되었다.

그러나 유업체전반에 걸쳐 만연돼온 집유쟁찰전, 재고누증, 집유기피 등이 반복되면서 유관업체는 자연스럽게 수급조절문제, 집유일원화 등 업계에 내재되어 온, 혼란타개를 위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낙농업계, 유가공업체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정부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건의를 해옴에 따라 지난 84년 농림수산부가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집유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발표도록 했다.

또 85년도에는 서울우유가 집유일원화, 검사공영

화, 계획생산제도 마련등을 골자로 한 원유의 계획 생산 및 유통개선 방안을 발표, 업계의 반향(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낙농업자의 집합체이며, 가공업계의 대부격인 서울우유가 원유수급문제등 업계현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자극된 한국유가공협회도 86년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낙농 유가공업계가 공동참여 공평타당한 법적 비영리성을 띤 제3자적 조정기구를 만들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같이 협동조합과 일반유가공업계의 집유일원화, 수급조절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정부당국도 수급조절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낙농 유가공산업의 안정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활동이 급진전됐다.

정부는 88년 5월 농촌경제연구원에 낙농 유가공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 주도록 용역을 줬으며 이에 농촌경제연구원은 낙농가, 유가공업계, 관련학계, 정부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을 대표로 하는 낙농발전협의회를 구성, 이 협의회에서 의결된 통일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 낙농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아래 대표자 8명으로 구성된 자문 회의와 구성원 21명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이중 5명의 실무 소위원을 두어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 낙농협의회는 우리나라 낙농 및 유가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집유 일원화, 검사공영화, 원유의 차등 가격제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의 결기구는 낙농가 유가공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정부대표 등으로 구성한다는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실제 집행하는 기구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 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낙농협의회는 이의 결론을 얻기 위해 88년 12월

20일 회의를 소집 집유업무를 수행할 기구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불편부당한 기구로서 낙농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집유는 협동조합이 맡아서 하기로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이 낙농협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지난 5월초순, 낙농진흥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낙농진흥법개정(안)은 낙농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서는 집유, 원유가격결정, 원유배분, 원유검사, 낙농가지도, 자조금(自助金)의 운영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원유집유업무의 실제관장은 협동조합이 하도록 위임됐으며, 원유검사는 집유조합 또는 협동조합에 원유검사보조원을 두어 운영하되 검사보조원은 낙농위원회소속 검사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이의 시행은 오는 90년 1월1일부터로 되어 있다.

이같이 농림수산부가 낙농진흥법개정(안)을 확정하기까지 이해당사자들을 비롯,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연구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보완작업을 해왔다.

낙농진흥법개정(안)의 낙농위원회 설치(안)은 이해당사자 및 유관단체의 연구와 다양한 체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같이 낙농진흥법개정(안)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입법절차가 남아 있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대립된 상당부분이 대통령령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 가 있어 대립국면은 심각해질 전망이다.

즉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중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은 낙농위원회에서 모두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지고 있는데 반해 낙농가는 이의 판매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안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을 한다면, 원유가 부족할 때 낙농가는 낙농위원회에 판매를 하지 않고 좀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유가공업체에 직접 납유하게 될 소지가 되며, 반대로 원유가 남아돌아 조건이 불리하게

되면 낙농위원회에 납유를 하게되고 이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낙농관리위원회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명확하게 보완하지 않는 한 집유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낙농위원회가 전량 집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수급계획이나 수급조절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결국 원유가 남아들 때에는 낙농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수급조절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낙농가 유가공업체, 정부가 공동출자한 출연금(出捐金)으로 조성키로 함에 따라 낙농가에 대한 확실한 설득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낙농가의 출연금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낙농위원회의 비대를 예방하고 견제장치

를 마련한 원유검사업무중 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보조원의 집유검사를 조작할 우려가 많은데 대한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같이 낙농진흥법개정(안)에 문제점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입법절차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해당사자들간 각기 유리한 입장에서 결말이 나오도록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낙농진흥법개정(안)에 이해에 얹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앞세워 낙농가는 낙농가대로 지역단위낙농단체는 단체대로 유가공업체는 업체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워 자기의 주장만 한다면 결국 모두가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결실은 어떤 문제이건 대화로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